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행정지원과)

의안번호	제 67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11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우리구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주민자치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방식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(안 제10조의2)

나. 간사 선임방법 개선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제27조 ~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2. 9. 8 ~ 9. 28., 의견제출 있음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주민자치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, 간사의 선임방식을 개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 - **안 제10조2(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)** :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사업 실행의 연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31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함.

 - **안 제15조(간사)** : 간사의 후보자격을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까지 확대하고, 간사 선임을 주민자치회 호선에서 자치회장이 선임하고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받도록 간사 선임 방식을 개정함.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사업 실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, 간사의 선임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